

2021년부터 바뀌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2021년부터는 14종의 포획금지 기준이 신설·강화 됩니다.

대표적으로
 △ **넙치와 살오징어** 금지체장이 강화되고
 △ **감성돔과 삼치** 금어기가 신설됩니다.



금어기·금지체장 개정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살오징어	(금어기) 4.1~5.31 (단, 연안복합 및 근해채낚기 4.1~4.30, 정치망 제외) (금지체장) 12cm *(단서) 20%미만 포획 시 제외	(금어기) 4.1~5.31(단, 연안복합, 근해채낚기 및 정치망 4.1~4.30) (금지체장) 15cm *(단서) 20%미만 포획 시 제외
대문어	(금지체중) 400g	(금지체중) 600g
참문어	(금어기) 해당없음	(금어기) 5.16~6.30 *(단서) 필요시 시·도지사 고시로 5.1~9.15 중 46일 이상을 정할 수 있음
감성돔	(금어기) 해당없음 (금지체장) 20cm	(금어기) 5.1 ~ 5.31 (금지체장) 25cm
넙치	(금지체장) 21cm	(금지체장) 35cm
기름가자미	(금지체장) 해당없음	
용가자미	(금지체장) 해당없음	(금지체장) 20cm 신설·강화
문치가자미	(금지체장) 15cm	*시행 후 3년간 17cm 적용
참가자미	(금지체장) 12cm	
청어	(금지체장) 해당없음	(금지체장) 20cm
삼치	(금어기) 해당없음	(금어기) 5.1~5.31
대구	(금어기) 부산·경남 1월, 그 외 3월 (금지체장) 30cm	(금어기) 1.16~2.15로 일원화 (금지체장) 35cm
미거지(강원도)	(금어기) 8.1~8.31(강원도)	(금어기) 삭제
넙미역(제주도)	(금어기) 9.1~11.30(제주도)	(금어기) 9.1~11.30(제주도) *(단서) 필요시 제주도 고시로 5.1~11.30 중 3개월 이상을 정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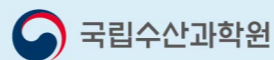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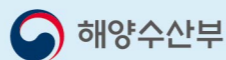
※ 개정안은 '21.1.1부터 시행

“ 씨를 말리면, 씨(Sea)가 마릅니다. ”



수산자원 보호 캠페인

바다야 바다야
치어줄게 풍어다오!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근해지원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을 기장해안로 216

금어기·금지체장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검색하세요!

www.mof.go.kr

금어기·금지체장 준수!

수산자원보호의 첫걸음입니다.



금어기·금지체장이 뭔가요?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알배기 어미와 어린물고기**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인 금어기와 금지되는 크기(무게인 금지체장(체중))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법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별표 2

누가 지켜야 하나요?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합니다.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하려는 어업인, 비어업인, 낚시인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포획 채취가 금지되는 어종을 잘 봐두었다가, 금어기에 잡히거나 금지체장보다 작은 어종은 다시 놓아주세요!



1. 낚시할 때는 낚시용 낚시줄(말찌)으로 낚시할 때나 마트, 시장에서는 물고기를 측정할 수 있는 편리한 자로 사용해주세요!
2. 낚시용 낚시줄은 더 큰 물고기가 될 수 있도록 놓아주세요, 지어줍!

치어령: 치어 + LOVE, 치어 + UP을 나타내며 우리 모두 어린물고기를 보호하는 사랑꾼이 되자는 의미예요!

만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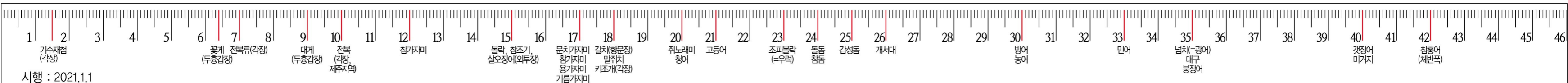
금어기·금지체장을 어기고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어업인은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비어업인과 낚시인은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거법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70조, 낚시관리및육성법 제55조





시행 : 2021.1.1

월	3월			4월			5월			
품종	명태	대구	가리비	살오징어	털게	고등어	코끼리조개	감성돔	삼치	참문어
포획금지기간	1.1~12.31	1.16~2.15	3.1~6.30	4.1~5.31(단, 근해채낚기, 연안복합, 정치망 4.1~4.30)	4.1~5.31(강원)	4.1~6.30 중 1개월	4.1~7.31(강원, 경북)	5.1~5.31(신설)	5.1~5.31(신설)	5.16~6.30(신설) (시·도지사는 5.1~9.15중 46일 이상을 설정가능)
포획금지체장		35cm		15cm	7cm(강원)	21cm		25cm		

월	6월											
품종	대하	전어	대항	감태	곰피	말쥐치	주꾸미	낙지	참홍어	꽃게	소라	펼달새우
포획금지기간	5.1~6.30	5.1~7.15(단, 강원, 경북 제외)	5.1~7.31	5.1~7.31(제주 연중)	5.1~7.31	5.1~7.31	5.11~8.31	6.1~6.30 (지자체 별도 고시 가능)	6.1~7.15	6.21~8.20(단, 연평 등 서해5도서 7.1~8.31)	6.1~8.31(전남, 제주), 7.1~9.30(제주 추자면) 6.1~9.30(울릉)	6.1~8.31
포획금지체장						18cm			42cm	6.4cm	5cm(제주 7cm)	10cm

월	7월												
품종	새조개	대게	갈치	참조기	해삼	백합	개서대	달새우	오분자기	키조개	붉은대게	옥돔	
포획금지기간	6.16~9.30 (단,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제주 6.1~9.30)	6.1~11.30	7.1~7.31 (근해채낚기, 연안복합 제외)	7.1~7.31(단, 유자망 4.22~8.10)	7.1~7.31	7.1~8.20	7.1~8.31	7.1~8.31	7.1~8.31	7.1~8.31	7.10~8.25 (단, 강원연안자망 6.1~7.10)	7.21~8.20	
포획금지체장		9cm	18cm(항문장)	15cm		5cm	26cm	5cm	4cm(제주)	18cm(부산, 울산, 강원, 경북, 경남)			

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품종	돔부기	전복류	넙미역	도박류	연어	툰	쥐노래미	개다시마	우뚝가사리	문치가자미
포획금지기간	8.1~9.30	9.1~10.31(제주 10.1~12.31)	9.1~11.30(제주) (단, 제주도 고시로 5.1~11.30 중 3개월 이상 지정 가능)	10.1~익년 4.30	10.1~11.30	10.1~익년 1.31	11.1~12.31	11.1~익년 1.31	11.1~익년 4.30	12.1~익년 1.31
포획금지체장		7cm(제주 10cm)					20cm			20cm (단, 3년간 17cm)

구제	금지체장																			
품종	기름가자미	기수재첩	갯장어	넙치	농어	도루묵	대문어	돌돔	미거지	민어	방어	불락	봉장어	용가자미	조피불락	참가자미	참돔	청어	항돔	항복
포획금지체장	20cm (단, 3년간 17cm)	1.5cm	40cm	35cm	30cm	11cm	600g	24cm	40cm	33cm	30cm	15cm	35cm	20cm (단, 3년간 17cm)	23cm	20cm(단, 3년간 17cm)	24cm	20cm	15cm	20cm

* 빨간색 : 2021.1.1부터 변경되는 어종

수산동물의 종류별 체장 측정도

품종	포획금지기준	품종	포획금지기준
꽃게	복부 외포란 암컷	대게	암컷
민꽃게		붉은대게	

(수산자원관리법 제6조 제3항)

☑ 문치가자미, 참가자미, 용가자미, 기름가자미의 경우 '21.1.1~'23.12.31까지는 17cm 이하 적용, '24.1.1부터는 20cm 이하 적용 ☑ 별도 금지 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참조 ☑ 개정 어종의 경우, '21.1.1부터 시행(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 '20.9.22 공포 및 11.10 공포)